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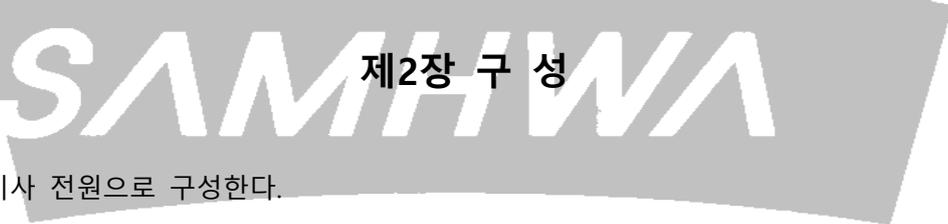
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 | <b>H. 인사/총무</b>  | 표 준 번 호: | SH-H-110   |
|   |                  | 개 정 번 호: | 0          |
|   | <b>이사회 운영 규정</b> | 제(개)정일자: | 2022.09.01 |
|   |                  | 페 이 지:   | 1 / 6      |

### 제1장 총 칙

1. 목적
 

이 규정은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적용범위
 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3. 권한
  - 3.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  - 3.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

### 제2장 구 성

4. 구성
 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5. 의장
  - 5.1 이사회의 의장은 제7조 제1항의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.
  - 5.2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인 부사장, 전무,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3장 회 의

6. 종류
  - 6.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  - 6.2 정기이사회는 매월 세 번째 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개최 횟수는 3월에 1회 이상으로 한다.
  - 6.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7. 소집권자
  - 7.1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

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 | <b>H. 인사/총무</b>  | 표 준 번 호: | SH-H-110   |
|   |                  | 개 정 번 호: | 0          |
|   | <b>이사회 운영 규정</b> | 제(개)정일자: | 2022.09.01 |
|   |                  | 페 이 지:   | 2 / 6      |

의장이 해당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7.2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 8. 소집절차

8.1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을 정하고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8.2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 9. 결의방법

9.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
9.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.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9.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9.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10. 부의사항

10.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### 1)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- (3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4)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- (5) 정관의 변경
- (6) 자본의 감소

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 | <b>H. 인사/총무</b>  | 표 준 번 호: | SH-H-110   |
|   | <b>이사회 운영 규정</b> | 개 정 번 호: | 0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 제(개)정일자: | 2022.09.01 |
|   |                  | 페 이 지:   | 3 / 6      |

- (7)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, 분할·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 등
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0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3) 현금, 주식, 현물배당 결정(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- 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5) 이사, 감사의 보수(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원에 대한 보수 총액 또는 그 상한을 정하고 개별 이사의 보수 결정을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개별 이사에 대한 보수액 결정을 포함함)
- (16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(17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8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)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- (3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5)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, 상무보의 선임 및 해임
- (6) 공동대표의 결정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8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(10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
- (11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12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, 개정 및 폐지 등
- (13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14) 간이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주식교환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

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 | <b>H. 인사/총무</b>  | 표 준 번 호: | SH-H-110   |
|   |                  | 개 정 번 호: | 0          |
|   | <b>이사회 운영 규정</b> | 제(개)정일자: | 2022.09.01 |
|   |                  | 페 이 지:   | 4 / 6      |

등의 결정

- (15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  - (16)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
  - 3) 재무에 관한 사항
    - (1) 투자에 관한 사항
    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    - 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    - (4) 결손의 처분
    - (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    - (6) 신주의 발행
    - (7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    - 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    - (9) 전환사채의 발행
    - 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    - (11)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    - 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    - (13) 자기주식의 취득·처분 및 소각
    - (14)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
  - 4) 이사 등에 관한 사항
    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   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    - (3) 타회사의 임원 겸임
    - (4) 이사 종류(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)의 결정
  - 5) 기타
    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    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    - 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10.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)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 - 2)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  - 3)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및 평가

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 | <b>H. 인사/총무</b>  | 표 준 번 호: | SH-H-110   |
|   | <b>이사회 운영 규정</b> | 개 정 번 호: | 0          |
|   |                  | 제(개)정일자: | 2022.09.01 |
|   |                  | 페 이 지:   | 5 / 6      |

- 4) 준법지원 활동 현황
- 5) 안전·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보고
- 6)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## 11. 이사회 내 위원회

- 11.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11.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- 1)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- 2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3)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- 4)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11.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11.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11.5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 12. 감사의 출석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## 13. 관계인의 출석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14.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

- 14.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14.2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 15. 의사록

- 15.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15.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|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 | <b>H. 인사/총무</b>  | 표 준 번 호: | SH-H-110   |
|   |                  | 개 정 번 호: | 0          |
|   | <b>이사회 운영 규정</b> | 제(개)정일자: | 2022.09.01 |
|   |                  | 페 이 지:   | 6 / 6      |

15.3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15.4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## 16. 감사

16.1 이사회에 감사를 둔다.

16.2 감사는 재경부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## 부 칙

### 1. 본 규정의 제정,개정,폐지

본 규정의 제정,개정,폐지의 시행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# 2. 시행일

이 규정은 202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